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54호 2020. 3. 12.(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647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648호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649호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65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651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652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 사천시 조례 제1653호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654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655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656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657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 사천시 조례 제1658호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31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3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35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5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 64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4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별표 2】 <개정 2020.3.1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연도	지급액
2019년	월 1,844,00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60%만큼 합산한 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60%만큼 합산한 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60%만큼 합산한 금액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4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4. “갈등영향분석” 이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 형량) 시장은 주요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 및 주요사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공공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 및 사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4.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④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제19조(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이 조례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4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  
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혁신법무담당관 및 심의대상 시책 등의 소관 부서장(이  
하 “소관 부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  
상 공무원 상당) 및 학계 인사

3.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혁신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를 “「의료법」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로, “별표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 월 500,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수의  
직공무원 의료수당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12조제1항 중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 을 “매월 2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천시 포상 조례」”를 “「사천시 포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1. “지방세”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사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사천시에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대상자 :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2. 제3조제2호 대상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과거 포상 기록 등 참작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만 원이하 상품권 지급
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 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별표 1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교부)
  - 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 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별표 1]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직경 6.50cm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의 4. 수산업 관계 란에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 :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 1건 1,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항에” 를 “제2항에 따라” 로 하며, “시가” 를 “사천시가” 로 하고, “지방산업단지의” 를 “산업단지의” 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로 하며, “지방산업단지의” 를 “산업단지의” 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산업단지관리공단” 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 기업체협의회” 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조제2항 중 “시에서” 를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지방산업단지의” 를 “산업단지의” 로 한다.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별표 1] <개정 2020.3.12.>

##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li> </ul>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li> </ul>	같은 법 제38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li> </ul>	같은 법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li> </ul>	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li> </ul>	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li> <li>• 교육·연수사업</li> <li>•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li> </ul>	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기업체 안전관리</li> <li>•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li> </ul>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li> <li>•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li> <li>•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li> <li>• 관리청사 유지관리</li> </ul>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li> </ul>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li> <li>•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li> <li>•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li> <li>• 산업단지 정비사업</li> <li>•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li> </ul>	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별표 2] <개정 2020.3.12.>

##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30분당 사용료	상한선	비 고
354,000원	2,000,000원	※ <u>사용시간이란</u>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 까지 시간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사천시 조례 제16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조례 제16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도 및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 수 있다.” 를 “아니한다.” 로 하고,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받은 경우” 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받았을 경우” 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의 생년월일란 다음에 성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별	남, 여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규칙 제73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2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동서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별표 1] <개정 2020.3.12.>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u>지방시설사무관</u>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별용동	별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사천시 훈령 제3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3월 1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별 표】<개정 2020.3.12.>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930	899	1	7	51	238	259	217	126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6	16			1	6	7	1	1				
공보감사담당관	15	15			1	6	5	2	1				
혁신법무담당관	13	13			1	5	4	3					
행정과	28	26	1	1	1	9	6	3	5		1		1
주민생활지원과	23	23			1	6	4	6	6				
노인장애인과	19	19			1	6	4	4	4				
여성가족과	19	19			1	4	6	4	4				
세무과	30	30			1	8	10	7	4				
회계과	24	24			1	6	6	10	1				
문화체육과	19	19		1	1	5	6	3	3				
관광진흥과	17	17			1	6	5	2	3				
환경보호과	16	16			1	5	5	3	2				
해양수산과	23	23			1	6	7	7	2				
민원교통과	24	24			1	6	8	7	2				
정보통신과	14	14			1	5	3	3	2				
재난안전과	22	22		1	1	6	5	5	4				
도시과	16	16			1	5	5	4	1				
건축과	21	21			1	6	6	6	2				
건설과	17	17			1	5	5	4	2				
도로과	21	21			1	5	7	4	4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도 시 재 생 과	17	17			1	5	6	5					
우 주 항 공 과	20	20		1	1	6	6	4	2				
산 업 입 지 과	16	16			1	4	6	3	2				
지 역 경 제 과	16	16			1	4	6	3	2				
녹 지 공 원 과	20	20			1	6	7	3	3				
토 지 관 리 과	18	18			1	5	5	3	4				
의 회 사 무 국	17	17		1	2	3	3	4	4				
보 건 소	89	89		1	3	18	31	32	4				
농 업 기 술 센 터	54	25		1	3	7	9	2	3			29	
평 생 학 습 센 터	13	13			1	4	4	2	2				
환 경 사 업 소	15	15			1	4	4	3	3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1	21			1	5	5	5	5				
신 수 출 장 소	2	2				1	1						
사 천 읍	25	25			1	6	5	9	4				
정 동 면	16	16			1	4	4	3	4				
사 남 면	18	18			1	5	6	3	3				
용 현 면	17	17			1	5	3	5	3				
추 동 면	13	13			1	4	3	4	1				
곤 양 면	14	14			1	4	3	4	2				
곤 명 면	14	14			1	4	4	3	2				
서 포 면	14	14			1	4	4	2	3				
동 서 동	15	15			1	3	2	5	4				
선 구 동	13	13			1	2	3	4	3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동 서 금 동	12	12			1	2	3	3	3				
별 용 동	18	18			1	3	6	5	3				
향 촌 동	13	13			1	2	3	6	1				
남 양 동	13	13			1	2	3	4	3				

기획예산담당관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직렬별										
총합계		16		1	6	7	1	1		
일 반 직	소 계	16		1	6	7	1	1		
	행 정	11		1	5	4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공보감사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6	5	2	1			
일반직	소 계	15		1	6	5	2	1			
	행 정	6		1	2	1	1	1			
	시 설	2				1	1				
	행정+시설	3			2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혁신법무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3		1	5	4	3				
일반직	소 계	13		1	5	4	3				
	행 정	7			4	2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행정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28	1	1	1	9	6	3	5	1	1
일반직	소 계	26	1	1	1	9	6	3	5		
	부이사관	1	1								
	행 정	18		1	1	8	5	1	2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운 전	2						1	1		
	사무운영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노인장애인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4	4	4			
일반직	소 계	19		1	6	4	4	4			
	행 정	4			1	3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0		1	3		2	4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주민생활지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6	4	6	6	
일반직	소 계	23		1	6	4	6	6		
	행 정	3			1	1	1			
	사회복지	5			1	1	1	2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4		1	4	2	4	3		

여성가족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4	6	4	4	
일반직	소 계	19		1	4	6	4	4		
	행 정	6			2	3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2		1	2	3	4	2		

세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0		1	8	10	7	4	
일반직	소 계	30		1	8	10	7	4		
	행 정	4		1	2		1			
	세 무	10			1	5	2	2		
	행정+세무	15			5	5	4	1		
	사무운영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회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6	10	1	
일반직	소 계	24		1	6	6	10	1		
	행 정	9		1	1	1	6			
	행정+세무	3			1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2				2				
	운 전	4				1	2	1		

문화체육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1	5	6	3	3	
일반직	소 계	19	1	1	5	6	3	3		
	행정+기술	1	1							
	행 정	3				2		1		
	행정+시설	5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6			3	1	1	1		
	행정+운전+방호+위생	2			2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관광진흥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6	5	2	3		
일 반 직	소 계	17		1	6	5	2	3		
	행 정	5			3	2				
	시 설	2				1		1		
	행정+시설	8		1	2	2	2	1		
	행정+공업+시설	2			1				1	

환경보호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3	2		
일 반 직	소 계	16		1	5	5	3	2		
	행 정	3			2	1				
	환 경	4			1	2		1		
	공 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 654호

해양수산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6	7	7	2	
일 반 직	소 계	23		1	6	7	7	2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7		1		1	3	2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해양수산+환경+시설	3				2	1			

민원교통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8	7	2	
일 반 직	소 계	24		1	6	8	7	2		
	행정	15			4	5	5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7		1	2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정보통신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5	3	3	2	
일 반 직	소 계	14		1	5	3	3	2		
	행정	1			1					
	행정+전산	3			1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9			3	3	1	2		

재난안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1	6	5	5	4	
일 반 직	소 계	22	1	1	6	5	5	4		
	행정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6			2	2	1	1		
	행정+전산	2				2				
	행정+방재안전	5					2	3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4	1	
일반직	소 계	16		1	5	5	4	1		
	행 정	5			2	1	1	1		
	시 설	4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건축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6	6	6	2	
일반직	소 계	21		1	6	6	6	2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0			2	3	4	1		
	행정+시설	5		1	2	2				
	행정+농업+시설	4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4	2	
일 반 직	소 계	17		1	5	5	4	2		
	행 정	3			1	1	1			
	시 설	5			2		2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무운영	1						1		

도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7	4	4	
일 반 직	소 계	21		1	5	7	4	4		
	행 정	1				1				
	시 설	7		1	2	1	2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2					2			
	방 호	1						1		
	운 전	3				1		2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도시재생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6	5		
일반직	소 계	17		1	5	6	5			
	행 정	3				2	1			
	시 설	6			3	2	1			
	행정+시설	7		1	2	2	2			
	행정+농업+녹지	1					1			

우주항공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1	6	6	4	2	
일반직	소 계	20	1	1	6	6	4	2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12		1	4	3	2	2		
	행정+공업+환경	2				2				
	운 전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산업입지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3	2			
일반직	소 계	16		1	4	6	3	2			
	행정	2			1	1					
	시설	3			1	1	1				
	행정+시설	8		1	1	3	1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지역경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3	2			
일반직	소 계	16		1	4	6	3	2			
	행정	2			1	1					
	세무	1			1						
	공업	1						1			
	행정+시설	5		1		1	3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녹지공원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6	7	3	3			
일 반 직	소 계	20		1	6	7	3	3			
	행 정	1					1				
	녹 지	6			1	3	1	1			
	행정+녹지	6			2	2		2			
	행정+농업+녹지	7		1	3	2	1				

토지관리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5	5	3	4			
일 반 직	소 계	18		1	5	5	3	4			
	시 설	7			2	2	1	2			
	행정+시설	9		1	2	3	1	2			
	행정+전산+시설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의회사무국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2	3	3	4	4			
일 반 직	소 계	17	1	2	3	3	4	4			
	행 정	6		1	2	2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행정+속기	2					1	1			
	속 기	1						1			
	운 전	2						2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보건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89	1	3	18	31	32	4	
일 반 직	소 계	89	1	3	18	31	32	4		
	기 술	1	1							
	보 건	7			1	4	1	1		
	의료기술	4				2	2			
	간 호	13				4	9			
	보건진료	12			3	5	4			
	행정+보건	6			3	1	1	1		
	행정+보건+간호	2				1	1			
	보건+의료기술	3				1	1	1		
	보건+간호	12			4	3	5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5			4	6	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8		3	2	1	2			
	사무운영	1				1				
운 전	2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4	1	3	7	9	2	3	
일반직	소 계	25	1	3	7	9	2	3		
	농 업	6			3	1	1	1		
	공 업	1				1				
	수 의	2				2				
	행정+농업	5			1	2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운 전	1						1			
지도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평생학습센터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4	2	2	
일 반 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8		1	3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사서	1					1			

환경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3	3	
일 반 직	소 계	15		1	4	4	3	3		
	공 업	1			1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2		1				1		
	운 전	3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상하수도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5	5	5	
일 반 직	소 계	21		1	5	5	5	5		
	행 정	2			1		1			
	시 설	5			1	2	1	1		
	공 업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2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1						1		
방 호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신수출장소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 반 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사천읍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5		1	6	5	9	4		
일 반 직	소 계		25		1	6	5	9	4		
	행 정		7				1	5	1		
	사회복지		3					2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사무운영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4	3	4			
일반직	소 계	16		1	4	4	3	4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2				2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방 호	1							1			

사남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5	6	3	3			
일반직	소 계	18		1	5	6	3	3			
	행 정	5				1	3	1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용현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5	3	5	3			
일 반 직	소 계	17		1	5	3	5	3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3		1	4	3	4	1			
일 반 직	소 계	13		1	4	3	4	1			
	행 정	3					2	1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2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곤양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3	4	2		
일 반 직	소 계		14		1	4	3	4	2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곤명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3	2		
일 반 직	소 계		14		1	4	4	3	2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서포면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2	3	
일 반 직	소 계	14		1	4	4	2	3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3	2	5	4		
일 반 직	소 계	15		1	3	2	5	4		
	행 정	5					5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보건	1			1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3	4	3		
일 반 직	소 계	13		1	2	3	4	3		
	행 정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2			1			1		
사무운영	1						1			

# 사 천 시 공 보

제654호

동서금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2		1	2	3	3	3			
일 반 직	소 계	12		1	2	3	3	3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3		1				1	1		

별용동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3	6	5	3			
일 반 직	소 계	18		1	3	6	5	3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향촌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3	6	1	
일 반 직	소 계	13		1	2	3	6	1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남양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3	4	3	
일 반 직	소 계	13		1	2	3	4	3		
	행 정	3				1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 사 천 시 공 보

제 654 호

사천시 고시 제2020-59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7-258호(2017.12.28.)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 사 천 시 장

### 1.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지역

사 업 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비고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경남 사천시 향촌동 1031-5번지 일원	119,114	근린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2. 해제사유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 3. 해제일시 :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 및 도시재생과(☎ 055-831-3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